

서울고등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나2023276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희

변 론 종 결 2021. 10. 28.

판 결 선 고 2021. 12. 16.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합54332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나주시 O 답 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8. 5. 23. 체결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4면 아래에서 8행의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법원의”로, “250,000,000원” 부분을 “2억 원”으로 고치고, 다음 제2항에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A은 201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나주시 K 답 1,120㎡ 외 4필지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서, 2016. 10. 26. 그에 관하여 2016.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5. 12. 위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2018. 6. 7. 피고에게 그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6. 10.경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의 변론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2016. 10.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8. 5. 23.경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사이에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A은 종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고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1. 11. 17.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정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대상인 재산의 회복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8. 12.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G으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8. 12. 12.경 A에게 그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9. 18.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는 V와 W으로부터 A에 대한 대여금을 지급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 이로써 사해행위의 대상인 재산이 채무자인 A에게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와 그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2018. 6. 7.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G이 2018. 12. 1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자,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금 2,3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와 같은 취소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인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이나 가액배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A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해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가액배상금 2,300만 원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현종, 판사 방웅환, 판사 정윤희